##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66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민홍철・이기헌・이건태

이재강 • 복기왕 • 정준호

한정애 · 한준호 · 윤종군

허성무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고속국도에 IC(연결로)를 추가설치하는 경우 IC 설치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 통행 수요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정 지역의 고속국도 통행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고속국도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추가 IC 설치 비용을 지방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제52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속국도 연결로의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존 고속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⑥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로		
	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91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